



서울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수신자 전 회원사

(참 조)

제 목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기간 연장 알림**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81호(2024.12.02.)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수급조절(2년 단위기간)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5차 수급조절 기간만료('24.11.30)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개최하여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 시행키로 의결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한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

나.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 ('24.12.1~'26.11.30. 기간연장)

다. 시 행 일 : 2024.12.1.

라. 제한방법

- 1)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 ('24.12.1~'26.11.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24.12.1~’26.11.30)

- 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신규 등록 또는 기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일 것
- ②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 등록 및 증차는 최대 42대까지 허용
- ③ 신규 등록 및 증차 차량은 향후 대폐차 시 수소전기자동차로만 가능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폐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전세버스조합이 아닌 관할 지자체에 신고
- ④ 협동조합의 경우 해당 신규 등록 및 증차 차량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양도 불가
- ⑤ 기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신규 등록 및 증차 차량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양도 불가하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는 가능

※붙임 : 전자관보 1부.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www.tourbus.or.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조합
이 사 장 오 성



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박호동 이사장

협조자

시행 서전버조 24- 201호 (2024.12.02.) 접수
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11층)
전화 02-422-0019 전송 02-418-0071 /

()
/ <http://www.tourbus.or.kr>
/ 공개

"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